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- 528호

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7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후임자를 위촉하기 전에 만료될 경우,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공백 발생

2. 주요 내용

- (내용) 후임자 인선이 지연되더라도 중소기업기술분쟁 사건 조정·중재는 중단되지 않게 기존 위원의 직무수행 계속 규정 명문화

< 운영세칙 개정(안) >

< 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 개정(안) >

제3조(위원의 임명 및 위촉) ①·② (생략)

<신설>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부칙

<신설> 이 고시 개정 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4. 의견 제출

- 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:기술보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hwankim@korea.kr

2) 주소 : (우 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

3) 팩스 : 044-204-77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(☎ 044-204-768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